

#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1월 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1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7년 1월 18일) 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통행정과장 강 덕 면)

### □ 제안이유

- 「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,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“지능형교통체계(ITS :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”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·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·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·처리·보관·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함.(안 제2조)
- 시설의 명칭은 "부천시교통정보센터"라 하고, 원미구 중동 1089번지에 두도록 함.(안 제3조)
- 교통정보센터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, 교통정보의 분석, 전기·통신망 등 관련설비 및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·운영·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, 도로교통시설관리, 도로순찰, 긴급구조, 교통방송·홍보, 공사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교통정보센터 업무와 관련

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사전 협의후 처리하도록 함.(안 제4조)

-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능형교통체계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, 관리자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정하고,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, 시설물관리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 후 그 점검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함.

(안 제5조 및 제6조)

- 도로굴착·점용 허가시에는 사전에 총괄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함.(안 제7조)
- 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전문가를 교통정보센터의 장으로 선임하고, 센터인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 및 제9조)
- 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함.(안 제10조)
- 위원회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,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,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,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시의원 1인, 공무원 및 지능형교통체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.(안 제11조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임기전이라도 해촉을 원하거나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3조 내지 제16조)
- 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)
- 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(안 제19조)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방범용 CCTV와 병행하여 상황실이 운영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다고 보는데 ?	○ 390평 규모의 건축물에는 ITS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이며 인접 자치단체와 광역교통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으로써 시기가 적절치 않으며, 방범용 상황실은 별도의 제2관 건물을 검토하고 있음.
○ 교통신호체계 또한 변경되는 것인지 ?	○ 교통정보의 수집 목적이며 향후 정보의 분석을 통한 신호체계가 변동될것임.
○ ITS 사업 시행후 교통흐름의 목표치는 설정되어 있는지 ?	○ 설계부분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며 인근의 시와 광역 교통 정보축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하는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것임.
○ 정보센터 조직 운영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비대하다고 보는데 ?	○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, 예산면에서 비교가 되겠지만 자치단체별 사업의 특색이 있고 시설의 내용 차이와 업무량을 검토하여 조직되었음.
○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 결정된 것인지 ?	○ 위탁된 것은 아니며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됨.
○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파견하는지 ?	○ 교통기획팀장이 겸직을 할것임.
○ 사거리의 건물에 위치하는 점포에서는 하루종일 물건을 승, 하차하여 선의의 피해도 예상되는데 ?	○ 상가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탄력적 적용하도록 하겠음.
○ 교통정보센터나 방범용 CCTV사업은 동일사업으로써 건물 증축으로 상황실이 운영된다면 예산 손실도 방지하고 토지 관리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보는데 ?	○ 사업의 시기가 적절치 않음.
○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국비 65억원을 지원받는데 방범용 CCTV 상황실 운영도 포함해도 가능한지 ?	○ 가능하나 교통정보센터는 광역사업으로써 인근시와 사업시기를 조정하여야 함.
○ 위원회 구성에 경찰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?	○ 조례 내용중 소속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할것임.

#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 의결

#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82
의결일자	2007.1.23

제안년월일 : 2007년 1월 9 일

제안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,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가. “지능형교통체계(ITS :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”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·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·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·처리·보관·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함.(안 제2조)

나. 시설의 명칭은 “부천시교통정보센터”라 하고, 원미구 중동 1089번지에 두도록 함.(안 제3조)

다. 교통정보센터는 지능형교통체계 및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, 교통정보의 분석, 전기·통신망 등 관련설비 및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·운영·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, 도로교통시설관리, 도로순찰, 긴급구조, 교통방송·홍보, 공사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교통정보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사전 협의후 처리하도록 함.(안 제4조)

라.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능형교통체계 주요시설물의 총괄관리자는 건설교통국장으로, 관리자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정하고,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로 하

요금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, 시설물관리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 후 그 점검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함.(안 제5조 및 제6조)

마. 도로굴착·점용 허가시에는 사전에 총괄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함.(안 제7조)

바. 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전문가를 교통정보센터의 장으로 선임하고, 센터인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 및 제9조)

사. 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함.(안 제10조)

아. 위원회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,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,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,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원은 시의원 1인, 공무원 및 지능형교통체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.(안 제11조)

자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임기전이라도 해촉을 원하거나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3조 내지 제16조)

차. 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17조)

카. 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9조)

##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, 교통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능형교통체계(ITS : Intelligent Transport System)”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·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·자동화하고, 교통정보를 수집·처리·보관·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과 위치) ①시설의 명칭은 “부천시교통정보센터”(이하 “교통정보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②교통정보센터는 원미구 중동 1089번지에 둔다.

제4조(교통정보센터의 업무) ①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통정보센터와 현장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
2.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정보의 수집·가공·제공·분석 업무
3. 전기·통신망 등 관련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
4. 기타 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유지관리

②도로교통시설관리, 도로순찰, 긴급구조, 교통방송 및 홍보, 공사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1항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 시장과 협의후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총괄관리자 등) ①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능형교통체계 주요시설물의 총괄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, 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②총괄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사항을 관장하며, 필요한 경우 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물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능형교통체계 점검 등)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관리자는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도로굴착·점용 허가시의 사전협의) 도로굴착·점용 허가시에는 사전에 총괄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8조(센터장) ①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전문가를 교통정보센터의 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으로 선임한다.

②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공무원의 파견) ①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
②파견은 교통정보센터 운영인원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설치)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정보센터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
2.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

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 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지능형교통체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시의회 의원 1인, 소속공무원과 지능형교통체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지능형교통체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제13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5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
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울 때
3.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
제17조(실무위원회) ①시장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정보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사업 추진에 관련된 보고서 및 도면 등에 관한 검토
2. 새로운 기술 및 첨단장비 도입 등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회 및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③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형교통체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.

④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의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